

# 경운대학교 비행교육원규정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경운대학교 비행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21.03.01.>

**제2조(정의)** 이 규정과 비행교육원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1.03.01.>

1. “비행교관”은 항공안전법에 따른 사업용조종사 및 조종교육증명 자격을 보유하고 비행교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교직원을 말한다.
2. “항공정비사”는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정비사 자격을 보유하고 항공기 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말한다.
3. “운항관리사”는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운항관리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또는 동등의 자격에 맞는 업무능력을 갖춘 직원을 말한다.
4. “관제사”는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을 보유하고 항공관제 업무 및 항공운항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말한다.
5. “항공전문행정담당자”는 항공 관련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행정업무 직원을 말한다.
6. “총괄 안전관리자”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자격을 보유하고 교육원 안전 업무에 종사하는 교직원을 말한다.
7. 기타 용어는 항공 안전법 등 관련된 법령에 따른다.

**제3조 (위치)** 비행교육원은 본원과 분원을 둘 수 있으며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03.01.>

1. 본원은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읍성로5에 둔다.
2. 분원은 내규에 따라 그 위치를 정할 수 있다.

**제4조(적용)** 본 규정은 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에 적용한다.

## 제2장 조직 및 업무

**제5조(조직)** ① 교육원에는 원장을 두고, 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항공 전문지식을 갖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03.01.>

- ② 교육원에는 교육부, 정비부, 지원안전부를 둔다.<개정 2021.03.01.>
- ③ 교육원의 각 부에는 부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21.03.01.>
- ④ 정비부는 필요에 따라 기술분야 정비사와 정비분야 정비사로 나눌 수 있다.  
<개정 2021.03.01.>
- ⑤ 지원안전부는 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지원분야, 운항관리(관제)분야, 안전관리분야로 나눌 수 있다.<개정 2021.03.01.>
- ⑥ 삭제 <2021.03.01.>
- ⑦ 삭제 <2021.03.01.>

제6조(기능) 각 조직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관장한다.

1. 교육부
  - 가. 비행교육 계획의 수립과 운영
  - 나. 교육생과 교관의 교육 및 평가
2. 지원안전부
  - 가. 교육원 운영에 관한 행정 업무
  - 나. 항공기 운항관리 및 관제 업무
  - 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업무
3. 정비부
  - 가. 정비계획 수립, 기술관리, 부품관리 및 교육 업무
  - 나. 정비업무, 장비관리, 수리개조 업무

[전문개정 2021.03.01.]

### 제3장 운영 위원회

- 제7조(설치 및 구성) ① 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03.01.>
-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원 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교학처장, 행정지원처장, 항공지원본부장, 항공운항학과 학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논의 사항에 따라 관련 부서장 또는, 전임교원을 위원장이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21.03.01., 2021.10.01.>
- ③ 운영위원회는 년 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필요시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1.03.01.>
- ④ 삭제 <2021.03.01.>

제8조(운영위원회 임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
2. 규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중요한 사항

**제4장 비행교관 <개정 2021.03.01.>**

**제9조(비행교관의 자격)** 운항실습을 담당하는 비행교관은 우리 대학교의 교직원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다.

1.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 소지자
3. 계기비행증명 소지자(비행기)
4. 조종교육증명 소지자(비행기)
5.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명 소지자
6. 기타 사항은 비행교육원 내규 및 우리 대학교 「교직원인사규정」에 준한다.

[전문개정 2021.03.01.]

**제5장 교육과정**

**제10조(범위)** 교육원에서는 재학생 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해 선발된 인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21.03.01.>

1.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취득을 위한 교육
  - 가. 자가용조종사과정
  - 나. 계기비행한정과정
  - 다. 사업용조종사과정
  - 라. 조종교육증명과정
  - 마. 등급한정추가과정
  - 바. 형식한정추가과정
2. 단체의 위탁에 의한 비행교육 또는, 항공관련 교육
3. 해외 또는 국내의 항공사업 또는 운송사업 업체가 요청한 인턴 교육
4. 이외의 교육과정의 경우 별도 조직을 구성하여 교육할 수 있다.

**제6장 입과 및 수료 <개정 2021.03.01.>**

**제11조(입과 자격)** 교육원의 입과 대상은 우리 대학교 재학생 및 교육원의 소정의 절차에 의해 선발된 자로 한다.

[전문개정 2021.03.01.]

**제12조(입과 시기)** 교육원의 교육 입과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재학생의 경우 매 1학기 초 개강일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21.03.01.>
2.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원의 교육계획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입과일은 조정될 수 있다.<개정 2021.03.01.>

**제12조의2(기숙사)** 비행교육원의 입과자 중 항공운항학과 재학생은 교육 기간 중 원활한 비행교육을 위해 플라잉센터 내의 생활관 입관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03.01.]

**제13조(수업)** 교육원의 수업은 교육원 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개정 2021.03.01.>

1. 각 과정의 실습수업은 과정별로 편성하되, 교육원에서 구성한 교과 일람에 따른다.
2. 항공운항학과 재학생의 실습수업은 학사일정에 따른다. 다만, 운항실습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학 중에도 교육 운영을 할 수 있다.
3. 교육입과자는 지속적으로 실습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제목개정 2021.03.01.]

**제14조 삭제** <2021.03.01.>

**제15조 삭제** <2021.03.01.>

**제16조 삭제** <2021.03.01.>

**제17조(교육생 의무)** 교육원에 입과 한 교육생은 우리 대학교 「학칙」, 「비행교육원규정」에 따른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03.01.]

**제18조(평가)** 평가는 단계별로 실시하며, 교육원의 교육규정 및 과정별 교과일람에 따른다.

<개정 2021.03.01.>

1. 삭제 <2021.03.01.>
2. 삭제 <2021.03.01.>

**제19조(수료)** 각 과정별 최종평가에 합격한 학생에 대하여는 소정의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03.01.]

**제20조 삭제** <2021.03.01.>

**제21조 삭제** <2021.03.01.>

## 제7장 비행운영

제22조 삭제 <2021.03.01.>

제23조(근무시간) 교육원의 근무시간은 학교 근무시간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행훈련의 특성상 기상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다. <개정 2021.03.01.>

1. 비행교관의 근무시간은 승무시간(Flight Time)을 적용하며, 일일 최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비행교관의 월간 비행시간은 내규 또는 지침에 따른다.
3. 전임교원의 책임 강의시수는 별도로 정한 내규에 따라 비행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삭제 <2021.03.01.>

제24조 (수당지급) ① 교육원은 별도로 정한 내규에 따라 초과 비행 수당을 비행교관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03.01.>

- ② 기타 정비 및 지원안전부의 경우 별도로 정한 내규에 따라 시간외 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간외 근무를 위해서는 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03.01.>

- ③ 삭제 <2021.03.01.>

제25조 삭제 <2021.03.01.>

## 제8장 교육비 납부<개정 2021.03.01.>

제26조(교육비의 납부) ① 교육생의 교육비는 계약에 의한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우리 대학교 재학생의 경우 예외 적용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03.01.>

- ② 기타 교육비와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내규 또는 지침으로 정한다. <신설 2021.03.01.>

[제목개정 2021.03.01.]

제27조 삭제 <2021.03.01.>

제28조 삭제 <2021.03.01.>

제29조 삭제 <2021.03.01.>

제30조 삭제 <2021.03.01.>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규정 이외의 교육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규정 이외의 교육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규정 이외의 교육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규정 이외의 교육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2. (운영지침) 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일 부터 시행한다.
2. (운영지침) 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부 칙<2019.09.0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2. (운영지침) 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부 칙<2021.03.0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2. (운영지침) 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부 칙<2021.10.0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삭제 <2021.03.01.>

[별표 2] 삭제 <2021.03.01.>

[별표 3] 삭제 <2021.03.01.>

[별표 4] 삭제 <2021.03.01.>

[별표 5] “삭제”

[별표 6] 삭제 <2021.03.01.>